

데이터3법. 핵심은 보호와 활용의 균형

개 **인정보 보호법** $\supset$ 정 **통신망법** **신** **용정보법**

관련법 **전** **자금융거매법** **온** **라이프자연금융법**

개 **인정보 보호법**

2020년 8월 5일 시행

④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가명정보 결합절차

	결합신청자		결합전문기관	결합관리기관 (인터넷진흥원)
신청	① <결합신청서>를 <결합전문기관>에 제출			
	② <결합신청서> 확인, 필요시 <결합신청자>에 보완요구			
	③ 일정 및 절차를 <결합신청자>와 협의			
	④ <결합키>생성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관리기관>과 협의		④ <결합키> 생성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	
정보 전송	협의 결과에 따라	① <결합키>는 -----	→ <결합관리기관>에 송부	
		② <결합대상정보>는 <결합전문기관>에 송부		
			①-1. <결합키>로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 <결합전문기관>에 제공	
	③ 결합률 정보 요청가능			③-1. <결합키연계정보> 생성과정에서 결합률을 확인하여 <결합신청자>에게 통보
결합			① <결합키연계정보>로 <결합대상정보> 결합	
			② <결합키연계정보> 파기	
분석 반출	①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에 방문 → 지정된 분석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가명정보> or <익명정보>로 처리			
	반출이 필요할 경우	① 반출신청	②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반출여부를 심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결합신청자, 결합전문기관, 결합관리기관간 공동시스템 구축 운영 가능

출처 : 데이터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사항 P2



<결합전문기관> 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1.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

규정	내용			
1. 2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전담조직 8인 이상 (다음 중 3명이상 상시 고용)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취득후 개인정보보호 or 데이터이용관련경력 (이하 개or데) 3년이상
		CISA, CISSP, ISMS_P인증심사원		
		변호사		
		정보보호, 정보통신, 정보기술, 개인정보, 데이터분석, 통계학 관련	박사	취득 후 개or데 경력7년이상
			석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취득후 실무5년이상 (개or데 3년이상 포함)
	개인정보의 가명·익명 처리 관련경력 5년 이상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인력 대상 교육계획				
3. 공간 및 시설 장비구축	〈결합대상정보〉의 수신, 반출정보의 송신시스템(네트워크, 데이터)			
	〈가명정보〉 결합시스템			
	분석 및 반출심사를 위한 독립공간 및 물리적 안전 시설·장비			
	가명·익명처리 및 통계처리 등을 위한 HW·SW			
	반출심사를 위한 HW·SW			
	관련 정보의 완전한 파기를 위한 SW			
	결합 및 반출 관련 기록·보관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및 정보의 보호를 위한 시설·장비			
	클라우드 활용시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서비스 이용			
4. 정책절차	결합, 분석, 반출심사(심사위원 구성 포함) 등 업무수행 정책 및 절차			
	개보법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내부관리계획			
	〈가명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결합·반출 관련 정보의 파기 및 기록·보관에 대한 정책 및 절차			
	분석 및 반출심사 공간에 대한 반출입 정책·절차			
5. 재무	다음 중 한가지 이상 충족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 가입액 10억 이상	자본금 50억 이상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50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에만 해당)

<결합전문기관> 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2. 본 고시상의 안전성조치

규정		내용			
법 29조, 영 30조 1항·2항의 안전조치		개보법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처리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특례 준수)			
본 고시에 따른 조치	안전 조치	비인가 인력·장치·정보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안전조치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솔루션 [DB] DB-i [WAS] WAS-i [SAP] App-i	
		<결합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DLP 시스템] Mail-i, Privacy-i 네트워크, USB, 출력물을 통한 정보유출방지	
	파기	<가명정보> 분석 or 반출이후에는 결합·반출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생성한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		기술적 보호 조치	개인정보자산식별및파기 Privacy-i Server-i
		<결합기관리기관>으로부터 <결합키연계정보>를 제공받아 <결합대상정보> 결합 후 <결합키연계정보> 파기			
	기록 보관	1. 결합·반출신청서 및 첨부 서류 2. 반출심사에 대한 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 3. 분석공간 이용 관련 <결합신청자>의 보안서약서 4. 결합정보 및 심사 대상 정보에 대한 파기대장			

고시 상세규정보기

조	내용			
1조 목적	〈결합전문기관〉 지정 〈가명정보〉의 결합·반출에 관한 기준·절차를 정함			
2조 정의	1. 〈보호위원회등〉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or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결합신청자〉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개인정보처리자		
	3. 〈결합키〉	결합대상인 〈가명정보〉의 일부로서 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정보주체와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정보		
	4. 〈결합키연계정보〉	동일정보주체에 관한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결합신청자〉의 결합키를 연계한 정보		
	5. 〈결합전문기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보호위원회 등〉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6. 〈결합기관리기관〉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3조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① 협의사항	1.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체계 연구·개선		
		2. 〈가명정보〉의 결합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3.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취소		
		4. 〈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5.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한 민원처리 및 법적분쟁		
		6. 그 밖에 이 고시의 집행 관련 협의사항		
	② 협의회참여대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부서장		
4조 보호 위원회의 지원	시스템	① 〈결합신청자〉, 〈결합전문기관〉, 〈결합기관리기관〉 간의 결합신청, 결합, 반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교육	② 〈반출심사위원회〉 위원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5조 〈결합 전문기관〉 지정절차	〈보호위원회등〉은	① 관보 or 홈페이지 등을 통해 15일 이상 지정신청 공고		
	〈결합전문기관〉 신청자는	②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을 첨부하여 제출 1. 정관 or 규약 2.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관한 서류		
	〈보호위원회등〉은	③ 〈결합전문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④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결합전문기관 지정서〉 발급		
6조 〈결합 전문기관〉의 관리감독	〈결합전문기관〉은	① 매년 1.31일까지 다음을 〈보호위원회등〉에 제출	1.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실적 보고서 2.〈결합전문기관지정기준〉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본 고시 13조제1항 및 제2항의) 안전성확보조치 이행 증명서류	
		〈보호위원회등〉은	②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 충족여부확인을 위해 자료요청 or 현장실사 가능	
			③ 령 29조의 3 3항 3호부터 5호 해당시 시정보완을 요구	3. 〈결합전문기관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결합 및 분석 등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7조 〈결합 전문기관〉 재지정	〈결합전문기관〉은	① 지정기간 만료일 6개월부터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가능	
〈보호위원회등〉은		②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심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통지		
③ 재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조	내용	
8조 〈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등	〈결합신청자〉는	① 결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결합전문기관〉에 제출
	〈결합전문기관〉은	②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필요시 〈결합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
		③ 〈가명정보〉의 결합일정 및 절차 등 결합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
9조 〈가명정보〉의 결합	〈결합신청자〉는	④ 〈결합키〉 생성에 필요한 사항을 〈결합신청자〉와 협의할 수 있다
	〈결합신청자〉는	① 협의결과에 따라 〈결합키〉는 〈결합기관관리기관〉에게 송부 그 외의 〈결합대상정보〉는 〈결합전문기관〉에게 송부. 이 경우 결합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포함하여 〈결합기관관리기관〉과 〈결합전문기관〉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 〈결합신청자〉로부터 〈결합키〉를 제공받아 지체없이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결합전문기관〉은	③ 〈결합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결합키연계정보〉 생성과정에서 결합물을 확인하여 〈결합신청자〉에게 통보
10조 결합된 정보 반출 전 처리	④ 〈결합기관관리기관〉으로부터 〈결합키연계정보〉를 제공받아 〈결합대상정보〉를 결합한 후 〈결합키연계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결합신청자〉는 〈결합된 정보〉를 분석공간에서 분석하고 〈가명정보〉 or 익명정보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1조 반출승인	①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가 반출요청시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반출여부를 심사	
	② 〈반출심사위원회〉 구성시 다음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1. 데이터활용에 관한 업무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개인정보보호관련 단체에서 경력이 있거나 관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12조 〈결합 전문기관〉 전담조직 구성·운영 등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법령이나 기술에 대한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① 〈결합전문기관〉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담조직을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13조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	②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전담조직 인력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① 〈결합전문기관〉은 안전 한 〈가명정보〉의 처리를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 준수 2.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3. 비인가 인력·장치·정보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안전조치 4. 결합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보관하여야 한다. 1. 결합·반출신청서 및 첨부 서류 2. 반출심사에 대한 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 3. 분석공간 이용 관련 〈결합신청자〉의 보안서약서 4. 결합정보 및 심사 대상 정보에 대한 파기 대장
	③ 〈결합전문기관〉은 보호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제2항 각 호의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4조 재검토기한	④ 〈결합기관관리기관〉은	〈가명정보〉의 결합이 완료되는 등 〈결합키생성정보〉와 〈결합키〉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